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89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이종성・이종배・김용판

임이자 • 권명호 • 김석기

권성동 • 윤창현 • 정동만

강기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 전부에 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 역시 2020년도부터 8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,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, 영유아,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

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29조"를 "제22조제1항·제2항, 제29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	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
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	제한) ①
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	
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	
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	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	
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	
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	
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	
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	
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	
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	
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	
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	
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	2
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	
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	
조제1호, <u>제29조</u> , 제30조제3	<u>제22조제1항·제2항,</u>

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, 제50조, 제55조, 제57 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

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의3 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항· 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76 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82 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제 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・③ (생 략)

제29조
②·③ (현행과 같음)